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가 2027.

1. 1. 시행 예정으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상법 제542조의8 등이 2026. 7. 23.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라 상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법인등기부에 독립이사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을 금지한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의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는 서면신고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 마련(안 제 42조의2부터 제42조의9까지)

1)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대상 회사 범위 명시(안 제42조의2)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

2)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규정(안 제42조의3)

- ①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등 직무 수행시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②개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물적 설비 구비 등

3) 전자주주총회 운영 규정(안 제42조의6)

- ①회사가 사전신청한 주주에 대해서만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②전자주주총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 또는 분량 제한 가능 등

4)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요건 규정(안 제42조의5)

- ①적절한 인적·물적 설비, ②주주 개인정보 등 보호 체계, ③사고 등에 대비한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 필요
-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이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 본인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명시(안 제42조의8)

-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절차 규정
- 전자서명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 등을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는 등 회사가 주주의 본인 확인을 위해 마련한 방법으로 주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6) 그 외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포함할 내용(안 제42조의7), 전자주주총회 관련 기록의 보존 대상(안 제42조의9), 전자통신수단의 정의(안 제42조의4) 등 규정

나. 독립이사제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등기 근거 마련

- 1) 시행령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안 제31조 제4항 및 제34조 제1항)
- 2) 상법 개정 전 ‘사외이사’로 재직 한 기간을 독립이사 결격기간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34조 제5항 제7호)
- 3) 독립이사를 선임한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기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22조 및 제23조)

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허용(안 제28조)

마. 부칙 규정 마련

- 1)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에 따른 개정 규정,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방법 확대 규정 : 즉시 시행
- 2) 독립이사 관련 규정,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 각 개정 상법 시행일
 - 독립이사 관련 규정: 2026. 7. 23.
 -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 2027. 1.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제처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식”을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주식”을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서면으로 하여야”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서면”을 “서면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 후 그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한 후 그 중 “제1항의 서면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을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및 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제1항제3호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제5항 제7호의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말미에 “(재직기간 산

정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상장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등기)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한 상장회사가 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전자주주총회의 개최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① 법 제542조의14제6항의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 회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2.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3.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적 설비

②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전자통신수단의 정의) 법 제542조의14제6항의 “전자통신수단”이란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제4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5(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①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적 설비
3.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②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로부터 전자주주총회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6(전자주주총회의 운영) ①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해서만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 또는 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경우 의사록에는 총회의 개최방식,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7(전자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법 제542조의14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참여 방법
2. 전자주주총회에 출석 및 의사 참여를 위해 회사에 사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청 방법과 절차
3.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이 제한되는 사실
4.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 및 의사 참여하려는 경우 대리권의 증명 등 그 방법
5.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과 내용

6.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의사 참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4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8(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①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주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는 등 회사가 주주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마련한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4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9(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의 보존) 법 제542조의15제4항에 따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1. 의사록
2.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참고자료 및 서류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 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1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개정규정: 2026년 7월 23일
2.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9까지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u>주식</u> 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 ----- ----- <u>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u> ----- ----- ----- ----- ----- ----- -----.
② <u>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u>	<u><삭 제></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가 그 회사 소유의 <u>주식</u> 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	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 ① --- ----- ----- <u>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u> ----- ----- ----- -----

한다.

1. ~ 3. (생략)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생략)

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 ① 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 ① ---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
로 -----.

② 서면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

-----.

1. ~ 5. (현행과 같음)

⑤ -----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
자문서를-----.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 공고)

① ~ ③ (생략)

④ 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외이사,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

④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

-----.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 공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독립이사-----

-----.

1. 독립이사 -----

2.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독립이사

독립이사

.

아니하다.

4. ~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생략)

1. ~ 6. (생략)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
한 자

⑥ (생략)

<신설>

<신설>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
--- 독립이사-----

--- 독립이사-----
(재직기간 산정에는 사외이사로 재직
한 기간도 포함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에 관한 등기)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한 상장회
사가 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
다.

제42조의2(전자주주총회 개최대
상 회사) 법 제542조의14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
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상장회사를 말한다.</u> <u>제42조의3(전자주주총회의 개최</u> <u>요건) ① 법 제542조의14제6항</u> <u>의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이</u> <u>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u> <u>춘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u> <u>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u> <u>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u> <u>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u> <u>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u> <u>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u> <u>호와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u> <u>다.</u> <u>1.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u> <u>관하여 회사가 그 직무를 수행</u> <u>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u> <u>2.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을</u> <u>위해 필요한 인력</u> <u>3.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u> <u>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u> <u>영을 위해 필요한 물적 설비</u> <u>②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u> <u>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u> <u>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42조의4(전자통신수단의 정의)</u>
---	--

<신 설>	<u>법 제542조의14제6항의 “전자통신수단”이란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u> <u>제42조의5(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u>
<신 설>	<u>①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신 설>	<u>1.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u>
<신 설>	<u>2.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적 설비</u>
<신 설>	<u>3.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u>
<신 설>	<u>②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u>

	<u>다. 다만, 회사로부터 전자주주 총회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u>
<u><신 설></u>	<u>제42조의6(전자주주총회의 운영)</u> <u>①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u> <u>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전자주주</u> <u>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u> <u>대해서만 전자주주총회 출석을</u> <u>허용할 수 있다.</u>
<u><신 설></u>	<u>②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u> <u>운영을 위하여 주주의 질의 및</u> <u>발언의 횟수와 시간 또는 분량</u> <u>을 제한할 수 있다.</u>
<u><신 설></u>	<u>③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주주총</u> <u>회를 진행하는 경우 의사록에는</u> <u>총회의 개최방식, 의사의 경과</u> <u>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u> <u>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u> <u>또는 서명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④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 운영 등</u> <u>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u> <u>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신 설></u>	<u>제42조의7(전자주주총회 소집의</u> <u>통지) 법 제542조의14제5항에서</u>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신 설></u>	<u>1.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참여 방법</u>
<u><신 설></u>	<u>2. 전자주주총회에 출석 및 의사 참여를 위해 회사에 사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청 방법과 절차</u>
<u><신 설></u>	<u>3.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이 제한되는 사실</u>
<u><신 설></u>	<u>4.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 및 의사 참여하려는 경우 대리권의 증명 등 그 방법</u>
<u><신 설></u>	<u>5.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과 내용</u>
<u><신 설></u>	<u>6.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의사 참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u>
<u><신 설></u>	<u>제42조의8(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①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u>
<u><신 설></u>	<u>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u>

<u><신 설></u>	<u>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u> <u>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u> <u>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u> 2.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u> <u>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3조 <u>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u> <u>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u>
<u><신 설></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u>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u> <u>주주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제공</u> <u>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u> <u>입력하는 등 회사가 주주의 본</u> <u>인 확인을 위하여 마련한 방법</u> <u>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u> <u>있다.</u>
<u><신 설></u>	제42조의9(전자주주총회의 개최 <u>에 관한 기록의 보존)</u> 법 제542 <u>조의15제4항에 따라 회사는 다</u> <u>음 각 호의 기록을 열람 가능한</u> <u>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u>
<u><신 설></u>	1. <u>의사록</u>
<u><신 설></u>	2. <u>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u> <u>부한 주주총회 관련 참고자료</u> <u>및 서류</u>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 락 처	(02)2110-4458